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기요금의 용도별 차등요금제 및 누진요금제 금지〉

■ 광상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04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광상언의원 등 2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1. 6.
3. 회부연월일 : 2024.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 소위 전기의 ‘사용 용도별’로 전기소비자를 구분한 후 각 용도의 전기요금을 서로 차등하는 요금제(이하 “용도별 차등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 주택용 전력의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전력사용량의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율이 증가하는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요금제(이하 “누진요금제”라 함)를 채택하고 있음.

“용도별 차등요금제”는 전기라는 재화가 소비자에 따라 구별될 수 없는 동일(同一)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의 사용 용도를 구별하고 그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것으로, 논리필연적으로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주택용 전기소비자인 전체 국민)로부터 낮은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전기소비자(예컨대, 산업용 전기소비자인 전력다소비기업)에게 전기판매를 매개로 부(富)의 이

전(移轉)이 발생하는 등 용도별 전기소비자 사이의 ‘교차보조(交叉補助)’가 발생하는 불공정함이 존재하므로, 오래전부터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모든 용도의 전기 중 오직 ‘주택용 전기’에만 규정되어 있는 “누진요금제”는 오직 주택용 전기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요금제로서 독점사업자가 판매하는 필수재화에는 도입된 전례가 없는데다가 생활소비가 특징인 주택용 전기에는 이론적으로 도입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점, 전국민이 생활에 필요한 수준의 전기를 소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요인이고 기후 변화 및 주택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모든 국민이 상시적으로 또는 여름철·겨울철에 과도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 때문에, 지난 십수년 동안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비등했음.

이러한 이유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는 경우 더 이상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누진요금제”를 채택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전기요금과 관련한 전기소비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전기요금을 정할 때 용도별 차등요금제 및 누진요금제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6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용도별차등요금제(주택용이나 산업용 등 전기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여 사용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를 말한다)나 누진요금제(전력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어 구간별 요금을 증가시키는 요금단가를 적용하는 요금제도를 말한다)를 규정하여서는 아니 된다.</u>

현행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이 전기공급약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하고 있음.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6개의 계약종별(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로 구분되어 요금 산정방식과 요금단가가 서로 다르게 적용됨.

그런데, 특정 계약종별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면서 다른 계약종별 전기사용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¹⁾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종별 전기요금 판매단가

연도	종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농사용	가로등
2019	108.7원	105.0원	130.3원	103.9원	106.6원	47.7원	113.9원
2020	109.8원	107.9원	131.6원	104.0원	107.4원	48.5원	114.4원
2021	108.1원	109.2원	128.5원	101.7원	105.5원	46.0원	113.0원
2022	120.5원	121.3원	139.1원	111.5원	118.7원	56.9원	124.5원
2023	152.8원	149.8원	169.5원	138.8원	153.7원	75.1원	152.7원
2024*	162.9원	156.9원	173.0원	143.0원	168.2원	82.1원	158.9원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도는 잠정 수치임.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또한, 주택용전력은 전기사용량 구간을 설정하고 전기사용량이 많은 구간일수록 기본요금과 단위당 전력량요금이 모두 증가하는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후위기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별 가구의 전력사용 확대로 인해 주택용전력 사용자의 전기소비가 크게 늘어나면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도 크게 증가²⁾할 우려가 있음.

주택용전력 누진요금제(2025년 1월 기준)³⁾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저압	200kWh 이하 사용 : 호당 910원	처음 200kWh 까지 : kWh당 112.0원
	201~400kWh 사용 : 호당 1,600원	다음 200kWh 까지 : kWh당 206.6원
	400kWh 초과 사용 : 호당 7,300원	400kWh 초과 : kWh당 299.3원
고압	200kWh 이하 사용 : 호당 730원	처음 200kWh 까지 : kWh당 97.0원
	201~400kWh 사용 : 호당 1,260원	다음 200kWh 까지 : kWh당 166.0원
	400kWh 초과 사용 : 호당 6,060원	400kWh 초과 : kWh당 234.3원

자료 : 한국전력공사

이에, 개정안은 한전이 전기요금을 약관으로 정할 때 용도별 차등요

2) 한전에 따르면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하계(8월)의 경우 최고구간인 3단계에 해당하는 가구가 2023년에는 844만 가구 였으나 2024년에는 1,022만 가수로 크게 증가함(전체 가구 수는 동일)

3) 전력소요가 급증하는 하계에는 구간과 요금을 다르게 정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함.

금제 및 누진요금제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용도별 전기사용자 간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누진제로 인한 일반가구의 과도한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1) 먼저, 용도별 차등요금제와 관련하여 계약종별 간 요금단가 차이가 과도하여 전력생산 및 공급의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전력 소비에 대한 가격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전기라는 주요 자원의 사용자 간 배분을 왜곡하여 비효율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다만, 영농인에 대한 지원과 국내 농업 진흥을 위하여 낮은 요금 수준을 유지⁴⁾하는 농사용전력의 경우와 같이 일부 계약종별에 대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산정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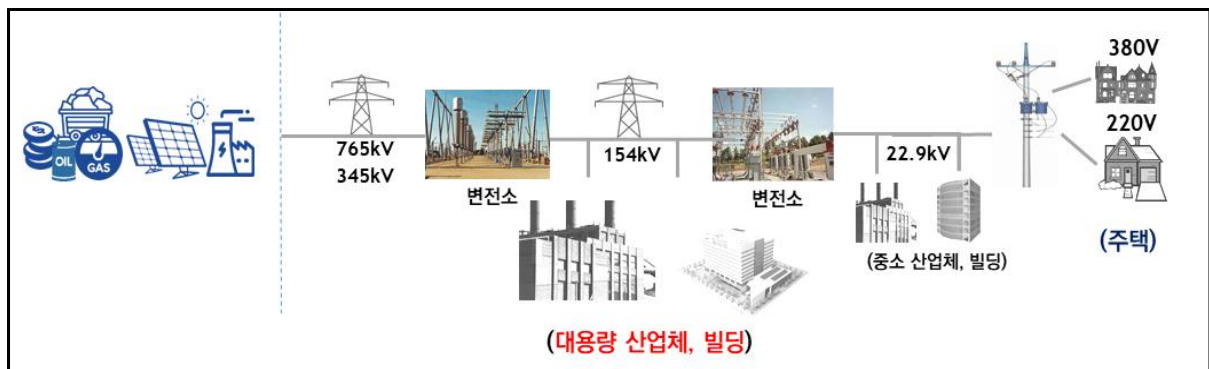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용자 유형별로 송·배전 및 판매비용, 사용량, 사용패턴 등에 따라 전기판매의 원가가 달라지고 이러한 차이가 현재 용도별 요금체계에 반영되어 있고,

산업용전력은 일반용전력에 비해 계약 사용량이 대규모인 고압 사

4) 김규호·유재국·장영주, 「농업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 현황 및 향후 과제」, NARS 현안분석 제 210호, 2021.10.1., 국회입법조사처, 5p.

용자가 많은데⁵⁾ 이런 경우 별도의 변전·배전 과정 없이 고압 송전선로에서 바로 전력을 받아 사용할 수 있어 전력손실이나 배전비용이 적게 발생하여 전기판매 원가가 낮아지게 되므로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완전히 폐지하면 오히려 원가주의에 위배될 수 있다는 입장임.

대용량 산업체 대상 전력 판매 프로세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2) 또한, 누진요금제를 폐지할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집단과 증가하는 집단이 모두 존재하므로 부담이 추가 또는 완화되는 집단의 비중, 요금부담 변화의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최근 첨단산업 육성,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등으로 인해 매년 국내 전기수요는 증가⁶⁾하나 이를 뒷받침할 전원설비는 점차 부족⁷⁾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전력의 수요관리 수단으로써 누진요금제의 필요

5) 2023년 기준 일반용과 주택용은 전체 판매량 중 고압 판매량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 산업용은 약 97%로 비중이 매우 높음.

6) 한전의 판매전력량은 2020년 509,270GWh, 2021년 533,431GWh, 2022년 547,933GWh, 2023년 545,966GWh로 대체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고, 하계·동계 최대전력또한 .

7)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1년부터 2036년까지 2034년을 제외하고 매년 목표설비 대비 확정설비가 적어 전력수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은 [참고자료] 참조

성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주택용전력의 누진제는 1·2단계는 원가 이하, 3단계는 원가 이상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단일요금제 도입·운영 시 전체 사용자의 87%에 해당하는 1·2단계 사용자의 요금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2023년 주택용전력 누진단계별 가구 통계

누진단계	가구수(천호)	비중 (누계)
1단계	11,801	44% (44%)
2단계	11,630	43% (87%)
3단계	3,351	13% (100%)

자료 : 한국전력공사

(3) 마지막으로, 용도별 차등요금제 및 누진요금제 적용 금지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용도별 차등요금제나 누진요금제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필요성과 한전의 경영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영과 관련된 요금제도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요금제 운영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참고로,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용도별 요금체계 및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해외 주요국 전기요금 체계

구 분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캐나다
요금체계	용도/전압별	용도/전압별	용도/전압별	용도/용량별	용도/용량별
주택용전력	누진요금제	누진요금제	단일요금제	단일요금제	누진요금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자료] 2023~2036년 연도별 전력수급 전망(제10차 전기분)

(단위 : GW)

연도	최대전력	목표설비	확정설비	과부족
2023	98.8	118.6	116.8	△1.8
2024	100.7	120.9	124.8	3.9
2025	102.5	123.0	128.1	5.1
2026	104.2	125.1	129.5	4.4
2027	105.8	128.0	131.7	3.7
2028	107.0	129.5	132.3	2.8
2029	108.2	130.9	133.0	2.1
2030	109.3	132.3	133.7	1.4
2031	110.8	135.1	134.8	△0.3
2032	112.2	136.9	135.5	△1.4
2033	113.6	138.5	138.1	△0.4
2034	114.8	140.1	140.1	-
2035	116.2	141.7	141.4	△0.3
2036	118.0	143.9	142.2	△1.7

자료: 산업통상자원부